

2009년도 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08. 11.

제출자 : 평창군수

1. 제안이유

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기준에 의거 작성한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,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0조 규정에 의거 평창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2009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대상은 토지매입이 5건에 33,149㎡ 1,317,085천원이고 건물 신축이 2건에 5,458㎡ 12,500,000천원임.

가. 토지 매입이

- ① 봉평재래시장 주차장조성 부지, 2필 3,468㎡ 253,906천원(관광경제과)
▷ 봉평면 창동리 412번지 외 1필지
- ② 진부재래시장 주차장조성 부지, 4필 2,276㎡ 714,366천원(관광경제과)
▷ 진부면 하진부리 206-95번지 외 3필지
- ③ Happy700평창 자연휴양림사업 부지, 4필 14,835㎡ 37,802천원(산림과)
▷ 봉평면 무이리 산78-2외 3필지
- ④ 봉평면 태봉정 궁도장이전 부지, 5필 10,480㎡ 123,747천원(문화체육과)
▷ 봉평면 원길리 296-1번지외 4필지
- ⑤ 미탄면 체육관건립 부지, 1필 2,090㎡ 187,264천원(문화체육과)
▷ 미탄면 창리 781-6번지

나. 건물 신축이

- ① 물구비 권역회관, 상안미리 1185-5 470m² 1,200,000천원(농축산과)
- ② 평창 국민체육센터, 종부리 산64-9 4,988m² 11,300,000천원(문화체육과)

3. 첨부자료

가. 2009년도 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목록

나. 관계법령 발췌서 1부.

관계법령 발취

『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』

제10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“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.

②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,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『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』

제7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 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(매입, 기부채납, 무상양수, 환지, 무상귀속, 교환, 건물의 신·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, 출자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및 처분(매각, 양여, 교환, 무상귀속, 건물의 멸실, 출자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 한다.

1. 예정가격에 있어서 시·군·자치구의 경우 취득 또는 처분 시 1건당 5억원 이상인 재산.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(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. 이하 “개별공시지가”라 한다)로 하고, 건물 그 밖의 재산에 있어서는 「지방세법」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. 다만, 건물의 신·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건축비 및 시설비로 한다.

2. 토지에 있어서 시·군·자치구의 경우 취득은 1건당 1천 제곱미터 이상, 처분은 1건당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재산